## 절차\_추시현(수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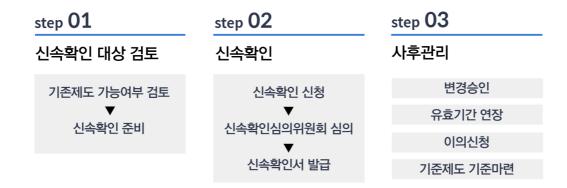
<ul><li>Created By</li></ul>	
Stakeholders	
Status	
⊙ Туре	
<ul><li>Created</li></ul>	@2023년 1월 18일 오후 11:22
① Last Edited Time	@2023년 1월 18일 오후 11:22
<ul><li>Last Edited By</li></ul>	

##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절차

투명

step 01	step 02	step 03
신속확인 대상 검토	신속확인	사후관리
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	신속확인 신청	변경승인
▼ 신속확인 준비	▼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	유효기간 연장
	V	이의신청
	신속확인서 발급	기준제도 기준마련

기본



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절차는 **신속확인 대상 검토, 신속확인 준비, 사후관리** 순으로 진행됩니다.

**신속확인 대상 검토**를 위해 **기존제도 가능여부**를 검토합니다. 제품이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가 가능한지 판별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으면 신속확인 대상이 됩니다.

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기업은 **신속확인 준비**과정으로 신속확인 신청을 위한 보안점검이 필요합니다. 보안점검은 취약점 점검,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, 기능시험 추진이 있습니다.

취약점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을 통한 해당 제품의 취약점 분석 • 평가합니다.(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)

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안전한 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보안 원칙 준수하는지 진단합니다.(전자정부법 제45조)

마지막으로, 기능시험 추진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소프트웨어 품질증명(GS) 인증이 있으면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.

신속관리 대상검토가 모두 완료되면,

**신속확인 신청**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,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서,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 등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절차 추시현(수정) 2

신청이 완료되면, **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**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검토결과와 기업 발표를 통해 심의·의결합니다.

심의결과가 적합인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확인서가 발급됩니다.

마지막 절차인 **사후관리**는 변경승인, 유효기간 연장, 이의신청, 기준제도 기준마련으로 나누어집니다.

**변경승인**은 제품 변경 시 다시 진단하는 것으로 취약점 점검과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통해 결과 확인 후 변경이 승인됩니다.

**유효기간 연장**은 유효기간이 만료에 가까울 때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인증제도를 검 토해 취약점 점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연장은 2년마다 가능합니다.

신속확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**기준제도 기준마련**은 신속확인 제품이 보안인증 기준이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. 이 경우, 연장을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종료됩니다. 또한, 정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## • 출처

보안 규제 개선으로 혁신전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(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: 신속확인제 도입)/과학기술정보통신부

https://www.msit.go.kr/bbs/view.do?

sCode=user&mId=113&mPid=112&bbsSeqNo=94&nttSeqNo=3182039

정보보호산업(신속확인 소개)/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(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)

https://www.ksecurity.or.kr/kisis/subIndex/552.do

신기술 정보보호제품도 공공부문 활용...정부 신속확인제 도입/연합뉴스 오규진 기자/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122098100017?input=1195m

절차 추시현(수정) 3